

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 지정 고시

[시행 2024. 4. 29.] [고용노동부고시 제2024-26호, 2024. 4. 29., 제정]



고용노동부(기업일자리지원과), 044-202-7235

1. 평가기관

「고용보험법」 제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으로 한국고용정보원을 지정한다.

2. 평가기관의 업무

고용보험사업 평가기관은 고용보험기금사업의 성과지표 산출·현장모니터링·심층평가 등 사업성과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, 사업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고용보험사업의 효율화를 지원한다.

부칙 <제2024-26호, 2024.4.29.>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고시는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